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0
------------	-------

발의연월일 : 2018. 4. 16.

발의자 : 박용진 · 김해영 · 정재호  
이철희 · 고용진 · 박찬대  
김관영 · 심상정 · 이학영  
최운열 의원(10인)

### 제안이유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혁신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여야 모두의 합의 속에서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 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

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실체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음.

이에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배제함(안 제37조의

2 신설).

나. 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계법인 또는 존속하는 회계법인은 분할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

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상법」 제522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이나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연대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  <u>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u>  <u>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u>  <u>할 수 있다.</u></p> <p>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u>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u>  <u>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u>  <u>이라 한다)할 수 있다.</u></p> <p>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u>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u>  <u>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u>  <u>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u>  <u>야 한다.</u></p> <p>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  <u>하여 설립되는 회계법인 또는</u>  <u>존속하는 회계법인은 분할하는</u>  <u>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u>  <u>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u>  <u>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u>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u>  <u>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u>  <u>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u>  <u>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u></p>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합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분할 또는 분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상법」 제522조의3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이나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③ (생략)  
<신설>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p><u>&lt;신 설&gt;</u></p> <p>④ 제1항 내지 <u>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u>분할합병하는 경우 당해 법인</u> <u>이 행한 위반행위는 분할 또는</u> <u>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u> <u>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u> <u>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u>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u> <u>(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u> <u>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 징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연대해서 납부하여야 한다.</u></p> <p>⑥ -----<u>제5항</u>----- ----- ----- -----.</p>
--	---